

[별표 3] <개정 2020.8.21., 2021.6.4., 2022.2.22., 2022.7.28., 2023.6.30., 2024.10.14.>

## 위원회 구성·운영 등

구성·운영 구분		구 성		간사	운 영
		인원	위원장 및 위원		
근무성적 평가위원회 (제18조)	5급	5명 이상	- 위원장 : 차장 또는 고위공무원 - 위 원 : 4급 과장급 이상 • 본청 5할, 소속기관 5할	"	
	6급	5명 이상	- 위원장 : 본청 고위공무원 - 위 원 : 담당급(5급, 4.5급) • 본청 5할, 소속기관 5할	"	
	7급이하	「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 준용			
배정심사 위원회 (제32조)	1차	5명 이상	- 위원장 : 차장 또는 고위공무원 - 위 원 : 4급 과장급 이상 • 본청 5할, 소속기관 5할	"	- 1차 : 본청 대 소속기관 배정 - 2차 : 소속기관 간 배정 * 이 경우 병무민원상담소는 소속기관으로 본다.
	2차		- 위원장 : 차장 또는 본청 고위공무원 - 위 원 : 본청 4급 과장급 이상		
보통승진 심사위원회 (제33조)	<del>5급</del> →4급	5명 이상	- 위원장 : 차장 또는 고위공무원 - 위 원 : 3급 이상 • 본청 5할, 소속기관 5할	"	
	<del>6급</del> →5급		- 위원장 : 차장 또는 고위공무원 - 위 원 : 4급 과장급 이상 • 본청 5할, 소속기관 5할	"	
	※ 4급과 5급 이외에는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4조의3과 「공무원임용규칙」 준용				
정보인사심의위원회 (제43조, 제45조, 제46조, 제51조)	5명 이상	- 위원장 : 차장 - 위 원 : 본청 4급 과장급 이상	"	- 본청 국·실 간 및 4.5급 승진자 전보 - 사무관급 정기전보 등	
		- 위원장 : 차장 또는 고위공무원 - 위 원 : 본청 4급 과장급 이상		- 본청 전입자 최종 선발	
		- 위원장 : 고위공무원 - 위 원 : 4급 과장급 이상 • 본청 5할, 소속기관 5할		- 6급 이하 정기전보 등	
보통고충심사위원회 (제60조)	5~7명	- 위원장 : 운영지원과장 - 위 원 : 청구인의 상위직	"	「공무원 고충처리규정」 제3조 준용	
보통징계위원회 (제69조)	7명	- 징계령 제5조 준용	"	「공무원징계령」 준용	

※ 위원, 간사 등 참석자는 심의 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